페업신고 1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결라잡이입니다.

개요

정보통신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 그 파산관재인,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,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, 그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 자가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.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☑ 이용방법

신청방법	우편, 방문		
접수 · 처리	즉시	시·도 접수	시・도 처리
수수료	수수료 없음		
구비서류	 ▶ 신청인(대표자)제출서류 1.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(1부)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(1부) >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) 1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(1부) 2 사업자등록증 (1부) 		
관련 법ㆍ제도	정보통신공사업법(제23조제2항)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(제24조)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(제5조제3항[별지21])		